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4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윤희)

가. 제안사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□ 출연 예정금액 : 102,186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-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- '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81,237,173천원 \times 1.5/10,000 = 102,186천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(C)	증감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80,333	80,333	0	102,186	21,853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
- (재)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연구원으로써, 출연금은 「지방세

기본법시행령」 제114조에 따라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.

- 따라서 금번 출연계획안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681,237,173천원의 1만분의 1.5인 102,186천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.

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

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□ 출연 예정금액 : 102,186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-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- '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81,237,173천원 × 1.5/10,000 = 102,186천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80,333	80,333	0	102,186	21,853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 (세정팀)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홍신	이강근	김용환	220-2753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 표 : 허동훈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현황 : (소재지) 서울 영등포구, (현원/정원) 27명/35명 (주요사업)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
출 연 사 업 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 예정금액 : 102,186천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천원)					
	구 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
	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	도비(100%)	80,333	80,333	0	102,186	21,853
	※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					
출 연 필 요 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
근거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세기본법」 146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4조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음.					
첨부자료	1.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 사업계획서					

1.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이사회 결산감사) 2014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,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안 제시에 성과를 창출하였음. 공동연구 역량을 제고하고, 예산편성은 집행률을 고려해 편성하며,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(운영실적 평가)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, 연구보고서의 외부평가 점수가 상승하고, 과제 선정 방식이 개선되었으나, 보고서의 가독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.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.
-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,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.

③ 출연금 요구 검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(C)	2016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80,333	102,186	102,186	-	21,853

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2. 출연기관 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 145조 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	전화번호 : 02-2071-2720		
	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
주요연혁	2011.2 설립등기, 2011.4 연구원개원			기관형태	출연		
인원현황 (‘15.09. 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43명 (5명)		27명 (5명) * ()지자체 파견공무원		16명 (위촉연구원15, 행정보조1)		
인원현황 (‘15.09. 기준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허○○	(전) ○○○○시장		2014.03.28~2017.03.27		
	부이사장	박○○	전남 ○○군 군수		2015.02.28~2016.02.27		
	원장	허○○	한국○○○연구원 원장		2014.04.15.~2017.04.14		
	이사	김○○	행정자치부 ○○○○정책관		당연직		
	이사	박○○	서울특별시 ○○국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류○○	세종특별자치시 ○○○○실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김○○	강원도 ○○○○실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이○○	전라북도 ○○○○국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이○○	대전 ○구 부구청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김○○	강원 ○○시 부시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정○○	경남 ○○시 부시장		2015.02.28~2016.02.27		
	이사	박○○	○○대 교수		2015.02.28~2017.02.27		
	감사	이○○	행정자치부 ○○○○○과장		당연직		
주요기능	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22,836 (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3년	2014년	2015년	재무현황 (단위:백만원) '14.12.31.기준	자산	5,380 (자산 총액)
	예산액 ²⁾	7,625	8,315	7,518		부채	212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 ³⁾	6,587	7,712	7,198		자본 ¹⁾	5,168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4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7,668			6,599		1,069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3.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세정과		출연	102,186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□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15년: 7,518백만원) 중 96%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□ 산출기초

- 출연 예정금액 : 102,186천원(도비 100%)
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를 출연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 (최근 5년간)	'11년(설립)	'12년	'13년	'14년	'15년
출연금	350,186	51,834	51,834	81,151	85,034	80,333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

- 제145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**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11.12.31.>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 <개정 2015.5.18.>
-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

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-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1.1.>
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.>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11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., 2013.1.1.>

1.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
가. 1만분의 1

나.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2.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
가. 1만분의 1.5

나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.>

1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. <신설 2010.12.30., 2011.12.31., 2014.1.1.>

1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2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(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)에 출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30.>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30.>

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.>